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837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최승재·이종배·서일준

장동혁 • 윤주경 • 윤창현

양정숙 • 박덕흠 • 유의동

백종헌 · 김희곤 · 정우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 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 대단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 통신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 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는 것임(안 제35조).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라. 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 |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 |
| 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 | 획의 수립) ① |
| 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 |
|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 | |
| (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 |
|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 | |
|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 |
| 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 | |
|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 |
| 그 밖에 물리적 • 기능적 결함 | |
| 등(이하"방송통신재난"이라 한 | |
| 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 | |
| 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 | |
| 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 |
|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 |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
| | 신고를 하고 서버, 저장장치, |
| |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 |
| | 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 ② |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1. 2. (생략)
-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 | 3. -----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 한 사항

가. ~ 다. (생 략)

<신 설>

4. (생략)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 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 크 등에 대한 물리적 • 기 술적 보호조치

4. (현행과 같음)